

1. 제안이유

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,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 산정(안 별표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중(2026. 4. 28. ~ 6. 8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○ 산재보험법 시행령 [별표3](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) 개정

현행	개정안
7. 눈 또는 귀 질병 차. 소음성 난청 85데시벨[dB(A)]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,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. 다만, 내이염, 약 물중독, 열성 질병, 메니에르증후군, 매독, 머리 외상, 돌발성 난청, 유전성 난청, 가족성 난청,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. 1) (생략) 2) (생략) <u><신설></u>	7. 눈 또는 귀 질병 차. 소음성 난청 (현행과 같음) 1) (현행과 같음) 2) (현행과 같음) 3) <u>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에서 아래 표의 진단일 당시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산정한다.</u>

연령(세)	보정값(db)
70	1
71	2
72	3
73	4
74	5
75	7
76	8
77	9
78	11
79	12
80	14
81	15
82	17
83	19
84	21
85 이상	23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8846